

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

#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 9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진천군 산수산업단지 일부를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난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의 승인을 받았으나
-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과정에서 지정면적이 일부 축소되어 이를 반영하고자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#### ○ 재산의 취득

〈진천산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부지 매입〉

구분	당초	변경
위치	진천군 덕산면 산수산업단지(10-4,15,16BL)	진천군 덕산면 산수산업단지(15,16BL)
매입규모	3블록 156,000m <sup>2</sup>	2블록 108,430m <sup>2</sup> (30.4% 감)
사업기간	2014. 3 ~ 2014. 12	좌동
사업비	26,072백만원 (국비 15,643, 도비10,429)	18,915백만원 (국비 11,349, 도비7,566)

※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 비율(60:40)

### 4. 검토의견

- 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천군 산수산업단지 일부를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난 2014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의 승인을 받았으나
-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과정에서 지정면적이 일부 축소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끝.